

## 韓·美間 한국내 방위물자 생산 기술사용료 양해각서

### 제1조 전 문

1.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칭함)와 미합중국정부(이하 미국정부라 칭함)는 상호협의를 검토를 거친후 방위산업기술협력이 상호 안보증진에 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한국에서 생산되는 미국 원산 방위물자의 기술사용료에 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칭함)를 체결한다.

1.2. 본 양해각서는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공동방위조약과 1950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원조협정의 목표와 일치한다.

### 제2조 범 위

2.1. 한국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방위기술 및 기술자료 묶음을 획득하였으며, 이들은 한반도의 방위를 위하여 미원산 방위관련 품목의 생산과 제작을 위해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칭함) 및 한국방위산업체에 제공되었다. 미국 정부 및 국방성(이하 국방성이라 칭함)은 한국 정부의 자체 방위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위능력 향상 노력과 방위산업 생산 능력개발을 지지해 왔다.

2.2. 본 양해각서는 미국정부가 그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갖는 미국 원산 방위물자를 한국정부 또는 한국방위산업체가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정 기술사용료의 면제와 특정 기술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관행을 인정하며, 이를 재확인한다. 본 양해각서는 본 각서가 존속하는 동안 유효한 기술사용료 면제 및 경감 대상 방위물자를 명시한다. 본 양해각서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방위품목으로서 한국에 의해 제작 또는 생산되는 모든 미국 원산품목은 그 제작 또는 생산당시의 미 국방성 방침이나 규정에 의거 적용가능한 기술사용료나 연구개발보상비 부과의 대상이 된다.

2.3. 본 양해각서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방위품목으로서 한국에 의해 제작 또는 생산되는 미국 원산품목은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양해각서 부록에 추가될수 있으며, 또한 양해각서 정신에 따라 기술사용료 부과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된다.

2.4. 본 양해각서의 부록은 본 각서가 존속하는 동안 기술사용료 면제가 승인된 한국방위 생산 품목의 두가지 범주를 명시한다. 부록 “가”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구식 미국원산 방위기술에 의한 한국 국방부 또는 방위산업체의 생산품목을 수록한다. 부록 “나”는 현재 미국내에서 생산중이거나 미국정부 또는 업체의 생산기반 유지상 관심 대상인 방위기술을 사용하여 한국 국방부 또는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수록한다.

2.5. 부록 “가”에 수록된 방위품목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본 양해각서가 존속하는한 국방부 자체의 소요나 한국내 저장 또는 한반도의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 또는 한국방위산업체가 생산한 품목에 대하여 기술사용료 면제의 관행을 재확인한다. 또한 본 양해각서가 존속하는한 부록 “가”에 수록된 품목의 승인된 모든 제3국 판매를 위한 한국내 생산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기술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국 판매에 대하여는 미국 국무성의 사전 서면 승인을 계속 얻어야 한다. “제3국 판매”라는 용어는 본 양해각서의 목적상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아닌 어떤 정부나 개인업체 또는 개인이나 반관 반민의 기구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6. 부록 “나”에 수록된 방위품목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본 양해각서가 존속하는한 국방부 자체의 소요나 한국내 저장 또는 한반도의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 또는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품목에 대하여 기술사용료 면제의 관

행을 재확인한다.

**2.7.** 한국정부는 부록 “나”에 수록되어 있고 미국에서 생산중인 품목의 제3국 판매(제2.5항에 규정됨)를 위한 한국정부 또는 한국업체의 생산에 대하여는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본 양해각서가 존속하는한 부록 “나”에 수록되어 있고 미국에서 생산중이 아닌 품목의 한국정부 또는 업체의 생산에 대하여는 기술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승인된 한국정부의 제3국 판매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2.8항에 따라 한국 판매가격에 대하여 8%이다. 부록 “나”에 수록된 방위품목의 제3국 판매시는 미국 국무성의 사전 서면 동의를 계속 얻어야 한다.

**2.8.** 부록 “나”에 수록된 방위품목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제3국 판매품목에 미국 국방성이나 미국업체에서 공급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미국정부가 승인한 모든 제3국 판매에 있어서 기술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관행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승인된 제3국 판매에 있어서의 기술사용료는 한국 판매가격의 8%이지만, 이 8%는 미국이 제작 또는 생산한 구성품을 제외한 한국 판매가격에 의거 산정한다. 한국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운송비나 수출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9.** 부록 “다”는 한국정부 또는 업체가 가능한 제3국 판매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할수 있다고 미국 국무성이 인정하는 국가를 수록하고 있다.

### 제3조 관리 및 행정사항

**3.1.** 본 양해각서는 미국정부를 위하여 국방성이, 그리고 한국정부를 위하여 국방부가 관리하고 행정처리한다. 국방성을 위하여 주무연락처는 국방안보지원본부장이 되며, 그의 한국내 연락담당은 주한 미군사지원단장이 된다. 국방부의 주무 연락처는 국방부 제2차관보가 되며, 그의 주한 미군사지원단장과의 연락담당은 국방부 방위산업국장이 된다.

**3.2.** 국방부는 본 양해각서의 부록에 수록된

방위품목의 한국정부 또는 업체의 생산 및 처리 현황을 주한 미군사지원단을 통하여 국방성에 계속 분기별로 통보하기로 동의한다. 한국정부는 부록 “가”와 “나”에 수록된 방위물자의 제3국 판매를 위하여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요청해온 지속된 방침을 재확인한다.

**3.3.** 국방부는 기술사용료의 지불에 책임을 지도록 동의한다. 국방부는 모든 승인된 제3국 판매(제2.5조에 규정됨)를 위한 방위품목의 기술사용료를 물품 인도후 45일 이내에 신속히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국방부는 본 양해각서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동의받은 제3국 판매품목에 대하여는 45일 이내에 해당 기술사용료를 지불한다.

### 제4조 보 안

**4.1.** 본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정부 또는 업체에 이전되는 모든 비밀물자 정보는 1950년 1월 26일자 한·미 상호 방위원조협정 및 한·미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1962년 5월 1일자 비밀보안협정,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체결된, 또는 앞으로 체결될수 있을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된다.

### 제5조 개정, 종료 및 유효일자

**5.1.** 본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는 본 양해각서 5.2항에 의거 양측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한 1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5.2.** 본 양해각서는 만기일 6개월 이전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하거나 개정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 종료시키거나 개정할수 있다.

**5.3.** 본 양해각서 또는 부록은 미국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1년 단위로, 또는 양측에 의하여 서면으로 합의시 개정될수 있다.

**5.4.** 본 양해각서의 해석상 또는 이행상의 견의 불일치가 발생할시 양측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주 이내에 회합하기로 동의한다.

5.5. 본 양해각서가 종료될 경우 보안상의 조항과 분기별 보고 조항, 그리고 제3국 판매 승인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각서의 종료시 본 각서의 부록 “가” 및 “나”에 수록된 방위품목의 한국생산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불은 국방부가 책임을 진다. 미국 국무성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부록 “가” 및 “나”에 수록된 방위물자의 제3국 판매가 발생할 경우 본 양해각서상의 면제조항은 무효가 되며, 국방부는 모든 기술 사용료의 지불에 즉시 책임을 져야 한다.

5.6. 본 양해각서는 영어 및 한국어로 2부 작성되며, 각각 동등한 정보이다.

### 부록 “가”

순 번	품 명
A-1	38구경탄
A-2	구경 30탄 (M1)
A-3	구경 30탄 (M2)
A-4	교환기 (SB-993)
A-5	추진장약 (M2)
A-6	추진장약 (M4 A2)
A-7	추진장약 (M67)
A-8	추진장약 (M131)
A-9	90밀리 무반동총 (M67)
A-10	106밀리 무동총 (M40 A2)
A-11	60밀리 조명탄 (M83 A3)
A-12	81밀리 조명탄 (M301 A3)
A-13	4.2"탄 (M329A1, A3)
A-14	90밀리탄 (M431 A2)
A-15	90밀리탄 (M371 A1)
A-16	105밀리탄 (M1)
A-17	105밀리탄 (M456 A1)
A-18	106밀리탄 (M344 A1)
A-19	8"탄 (M106)

### 부록 “나”

순 번	품 명
B-1	60밀리 박격포 (M19)
B-2	81밀리 박격포 (M29 A1)
B-3	4.2" 박격포 (M30)
B-4	20밀리 발칸포
B-5	M60 기관총
B-6	20밀리탄
B-7	60밀리탄 (M49 A4/A3)
B-8	60밀리 연막탄 (WP M302)
B-9	81밀리탄 (M374)
B-10	81밀리탄 연막탄 (WP)
B-11	4.2"탄 (M329 A2)
B-12	105밀리탄 (M314 A1)

### 제6조 서 명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국방성을 대표하여

이 상 훈                      딕 체 이 니  
국 방 장 관                      국 방 장 관

서 명 일 : 1989년 7월 18일

서명장소 : 미 합중국 워싱턴 디씨

순 번	품 명
A-20	대전차지뢰 (M19)
A-21	M557 신관
A-22	M564 신관
A-23	M565 신관
A-24	M728 신관
A-25	AN/GRC-122/142 무전기
A-26	M79 유탄발사기
A-27	박격포 조준경 (공통)
A-28	M12 A7 A 파노라믹 조준경
A-29	105밀리 포가
A-30	추진제 (M36 A1)
A-31	추진제 (M90)
A-32	추진제 (M185)
A-33	추진제 (M181, M182)
A-34	추진제 (M6, M6+2)
A-35	추진제 (M30)
A-36	추진제 (M82)
A-37	추진제 (M26)
A-38	105밀리 곡사포 (M101 A1)
A-39	155밀리 곡사포 (M114 A2)

순 번	품 명
B-13	105밀리탄 (M444 E1 ICM)
B-14	105밀리탄 (M444 A1 ICM)
B-15	수류탄 (M67)
B-16	5인치 38구경 함포탄 (MK-51)
B-17	155밀리탄 (M107)
B-18	155밀리탄 (M549)
B-19	대인지뢰 (M18 A2 클레이모아)
B-20	M524 신관
B-21	M525 신관
B-22	M526 신관
B-23	M509 신관 (A1, A2)
B-24	M503 A1 신관
B-25	TA-312 전화기

순 번	품 명
B-26	AN/PRC-77
B-27	AN/VRC-12
B-28	AN/MMQ-1B
B-29	AN/APX-72
B-30	AN/PMQ-6
B-31	AN/USA-32
B-32	AN/URC-87
B-33	M203 유탄발사기
B-34	AN/TVS-5
B-35	AN/PVS-5A
B-36	방독면 (M9 A1)
B-37	M2 조준경
B-38	81밀리 박격포 조준경
B-39	옹벽장비 (Revetment Kit)
B-40	화학약품 자동 경보기 (M-10)
B-41	전화교환기 (TCC-7K)
B-42	조명지뢰 (M49 A1)
B-43	40밀리 신형고성능 유탄 (M433)

순 번	품 명
B-44	(MK FIRING MECHANISM)
B-45	추진장약 (M1)
B-46	90밀리 대전차탄 (APFSDS-T)
B-47	추진장약 (SPDN)
B-48	신관 (MK403)
B-49	신관 (M505 A3)
B-50	신관 (KM751)
B-51	신관 (KM427)
B-52	신관 (KM65 A1)
B-53	신관 (KM84 A1 E1)
B-54	신관 (KM K27 MOD1)
B-55	4.2" 연막탄 (WP M328A1)
B-56	105밀리 연막탄 (WP M68A2)
B-57	155밀리 연막탄 (WP M110A2)
B-58	연막수류탄 (WP M34)
B-59	무선통계기 (AN/GRA-39B)
B-60	(AN/GSQ-154)
B-61	전화교환기 (TCC-15K)

**부록 “다” : 한국이 판매 가능한 국가 목록**

아프리카지역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유럽 지역	남북미주지역	근 동 지역	중동 지역
알제리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안티구아	알제리아	이집트
베닌	브루나이	벨기에	아르헨티나	바레인	이스라엘
보츠와나	중국	캐나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레바논
카메룬	피지	덴마크	벨리세	인도	요르단
케이프 베르데	인도네시아	핀란드	볼리비아	쿠웨이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일본	프랑스	브라질	모로코	
차드, 르완다	말레이시아	독일	콜롬비아	네팔	
지브티, 세네갈	뉴질랜드	그리스	코스타리카	오만	
적도 기니	파푸아 뉴기니	아이슬란드	도미니카	카타르	
가봉, 토고	싱가포르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갬비아	필리핀	룩셈부르크	에콰도르	스리랑카	
가나, 자이레	대만	말타	엘살바도르	투니시아	
기니, 짐바브웨	태국	네덜란드	그레나다	아랍에미리트	
기니-비사우	통가	포르투갈	온두라스	예멘	
아이보리 코스트		스페인	자메이카		
케냐		스웨덴	멕시코		
마다가스카르		스위스	페루		
말라위		터키	키츠네비스		
말리		영국	빈센트		
모리타니아		유고슬라비아	수리남		
모리셔스			트리니다드 토바코		
니제르			우루과이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